

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7]

판매가격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내용 등(제43조제5항 관련)

공개 대상	공개대상 축산물의 종류	공개내용	공개 시기		
			1일간	주간	월간
1. 계열화사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	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닭(육계, 토종닭, 삼계) 및 오리의 도체	계열화사업자 전체가 전일, 지난주 및 지난달에 가맹(프랜차이즈), 대규모점포, 대리점 등에 판매한 닭·오리고기 판매량의 호수별 kg당 평균 판매가격 $\left[\text{평균 판매가격} = \frac{\text{매출액}}{\text{판매량}} \right]$	보고 일의 다음 일	다음 주 월요일	다음 달 1일
2. 계열화사업자별로 판매대상별 평균 판매가격	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닭(육계, 토종닭, 삼계) 및 오리의 도체	계열화사업자별로 전일, 지난주 및 지난달에 가맹(프랜차이즈), 대규모점포, 대리점에 판매한 닭·오리고기 판매량의 kg당 평균 판매가격 $\left[\text{평균 판매가격} = \frac{\text{매출액}}{\text{판매량}} \right]$	보고 일의 다음 일	다음 주 월요일	다음 달 1일

비고

1. 공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의 평일로 한다.
2. 축산물 판매가격은 인터넷(www.ekape.or.kr 등), 모바일 등 전자매체 및 간행물, 인쇄물 등 서면을 이용하여 공개한다.
3. "도체"란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.